

제320회 임시회
2013.5.15.(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15 (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완백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4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5월 10일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완백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중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개정(안 제1조)
- 귀농인 연령제한 삭제(안 제2조)
-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도의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중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5. 10, 김도경 의원
- 수정이유
 - 개정되는 조례안 중 ‘귀농인’의 용어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귀농인’의 정의를 함께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개정되는 조례안 중 '귀농인'의 용어정의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귀농인'의 정의를 함께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부칙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지원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본다.</p> <p>(신 설)</p>	<p>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p> <p>제2조(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원안과 같음)</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5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9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체계

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인의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자격,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6. 귀농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지원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9조의2-----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귀농인”이란 만 55세 이하의 자가 다른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어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p>

현 행	개 정 안
<p>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생 략)</p> <p>4.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 시한 지역을 말한다.(단,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제외)</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 조와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 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 대책을 5년마다 수립 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생 략)</p>	<p>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 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농 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 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귀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인 유치·홍보·교육, 재정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p>②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인의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자격,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6. 귀농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도내 귀농인 현황

□ 2012년 현황

○ 시 군 별

시군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가구수	970	8	102	59	67	100	128	177	22	57	110	65	75
인구수	1,923	24	202	110	190	168	256	325	51	109	213	114	161

○ 연령대별(세대주 기준)

연령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구수	970	19	88	182	365	244	67	5
비율	100%	2%	9%	19%	37%	25%	7%	1%

□ 2011년 현황

○ 시 군 별

시군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가구수	373	1	52	23	16	30	71	50	3	9	65	15	40
인구수	779	2	106	32	43	72	162	107	7	16	130	30	72

○ 연령대별(세대주 기준)

연령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구수	970	2	27	83	151	90	22	
비율	100%	1%	7%	22%	40%	24%	6%	

2013년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

□ 정부 지원사업

-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200백만원
 - 농가 주택구입 : 40백만원
-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 사업량 : 1개소/ 30,000m² 정도
 - 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4,000, 지방비 4,000)
 - 사업내용 : 체재시설(30동), 개별농장, 실습농장, 교육시설, 기타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사업량 : 4개시군
 - 사업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20, 시군비 280)
 - 사업내용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 등
- 전원마을 조성
 - 사업량 : 2개지구
 - 사업비 : 1,371백만원(국비 960, 도비 123, 시군비 288)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 도비 지원사업

- 도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지원(연리 1%)
 - 시설자금 : 100백만원(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50백만원(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
 - 사업량 : 2개마을, 10동/ 마을당 5동, 3,000m²
 - 사업비 : 700백만원(도비 189, 시군비 441, 자담 70)/ 마을당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체재시설(30동), 개별농장, 실습농장, 교육시설, 기타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사업량 : 50가구
- 사업비 : 년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가구당 2백만원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주방 싱크대, 창문틀, 지붕개량 등

○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

- 도 차지연수원/ 7개과정/ 260명

□ 시군 자체사업

시군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비 (천원)	지원조건
계	9개 시군		555,200	
충주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정착교육	- 50호(호당 1백만원) - 85명(30백만원)	50,000 30,000 26,000	시비 100% 시비 100%
제천시	귀농귀촌정착프로그램 운영	- 1식(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	시비 100%
보은군	귀농인 정착자금 귀농인농기계구입자금지원 귀농인 농지구입세제지원 귀농인 생활자재구입	- 6호(호당3~5백만원지원) - 6호(관리기,경운기등) - 5호(취득세,등록세) - 10호(영농자재, 생활자재)	30,000 30,000 10,000 2,000	군비 100% 군비 100% 군비 100% 군비 100%
옥천군	농기계구입 지원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턴제 지원	-17호(관리기1, 경운기1.5백만원) -10호(호당 3백만원 한도) - 7호(호당 5백만원) - 5명(호당 3백만원)	20,000 30,000 35,000 15,000	군비 100% 군비 100% 군비 100% 군비 100%
영동군	도시민영동군유치사업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 1식(도농교류행사,시골살이) -10호(호당 5백만원 한도) -11호(호당 2백만원 한도)	2,500 50,000 22,000 22,000	군비 100% 군비 100% 군비 100%
증평군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10호(호당 3백만원)	30,000	군비 100%
괴산군	귀농지원센터 관리	- 1식	13,720	군비 100%
음성군	귀농인빈집수리비	- 4호(호당 5백만원)	20,000	군비 100%

단양군	이차보전사업(용자)	- 금리 1.5%	100,000	군비 100%
	귀농인 농기계지원사업	- 5호(호당 1백만원 한도)	5,000	군비 100%
	귀농인 비닐하우스신축	- 5호(호당 1백만원 한도)	5,000	군비 100%
	빈집수리비 지원	- 5호(호당 5백만원)	25,000	군비 100%

2012년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

□ 정부 지원사업

-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200백만원
 - 농가 주택구입 : 40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사업량 : 2개시군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60, 시군비 140)
 - 사업내용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 등
- 귀농인 실습지원
 - 사업량 : 10명
 - 사업비 : 60백만원(국비 42, 도비 5, 시군비 13)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영농기술 실습 채용 지원
- 전원마을 조성
 - 사업량 : 1개지구
 - 사업비 : 1,124백만원(국비 787, 도비 101, 시군비 236)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 도비 지원사업

- 도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지원(연리 1%)
 - 시설자금 : 100백만원(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50백만원(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사업량 : 년 50가구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가구당 2백만원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주방 싱크대, 창문틀, 지붕개량 등
-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
 - 도 차지연수원/ 5개과정/ 160명

□ 시군 자체사업

시군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비 (천원)	지원조건
계	9개 시군		452,500	
충주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50호(호당 1백만원)	50,000	시비 100%
제천시	귀농귀촌정착프로그램 운영	- 1식(프로그램 운영)	20,000	시비 100%
보은군	귀농인 정착자금	- 10호(호당 5백만원지원)	50,000	군비 100%
	귀농인농기계구입자금지원	- 10호(관리기,경운기등)	50,000	군비 100%
	귀농인 농지구입세제지원	- 10호(취득세,등록세)	20,000	군비 100%
	귀농인 생활자재구입	- 12호(영농자재, 생활자재)	2,500	군비 100%
옥천군	농기계구입 지원	-17호(관리기, 경운기등)	40,000	군비 50%, 자담 50%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	-10호(호당 3백만원 한도)	30,000	군비 100%
	빈집수리비 지원	- 5호(호당 5백만원)	25,000	군비 100%
	귀농인턴제 지원	- 5명(호당 6백만원)	30,000	군비 50%, 자담 50%
단양군	이차보전사업(용자)	- 금리 1.5%	100,000	군비 100%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	- 1식	10,000	군비 100%
	빈집수리비 지원	- 5호(호당 5백만원)	25,000	군비 100%